

중남미연구소 HK연구교원 업적평가규정(세칙3)

규정번호 : 19-4

제정일자 : 2019.05.15.

개정일자 : 2019.08.26.

개정일자 : 2022.04.30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(이하 'HK+사업위원회 사업'이라 한다)의 효율적 운영과 HK연구교수의 연구력 제고를 위한 내부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HK+사업위원회 사업단의 HK연구교수에게 적용한다.

제3조 (평가단위) HK+사업단 소속 HK+교수와 HK연구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연차평가, 단계평가, 승진평가, 재임용 평가로 구분하며, 평가시기는 임용 기준일과 해당 평가의 정해진 시기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제4조 (평가기준)

① HK연구교수는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등급의 저널에 연간 단독 논문 2편 및 아젠다 공동연구 논문 1편을 게재하여야 한다. 단, 사업단 총 연구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이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. 연구실적의 점수 산정은 본 대학 규정 및 <별표1>을 따른다. 이 외에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최소 B 등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② HK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에 있어 <별표 2,3>의 연구실적 및 근무점수 기준을 적용한다.

제5조(평가영역) 업적평가는 다음의 2개 영역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.

1. 연구부문
2. 근무부문 (HK+사업단 기여) 부문

제6조 (평가 절차 및 방법)

① 평가 대상 연구교수는 평가 관련 자료를 소정 기일 내에 소속 연구소 (중남미연구소)에 제출한다.

② 연구소는 <별표1>과 HK+ 사업단운영규정 <표1>에 의거, 평가를 실시한다.

③ 업적평가 결과는 HK연구인력의 임용 및 재임용에 반영한다.

제7조 (업적평가위원회)

①HK+사업단 소속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

위하여 HK+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HK+사업단장이 되고, 위원은 사업단 일반연구원 및 교내·외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HK+사업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8조 (규정 개정) 본 규정은 단장이 연구소 'HK+플러스 사업 생태문명 융합연구위원회(EC-CRC)'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제9조 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과 「인문한국 플러스(HK+)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1) 이 규정은 2019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2) 이 규정은 2019년 08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3) 이 규정은 2022년 0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